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99 | 2025.09.08 (2025.09.01~2025.09.07)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①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② 범정부 총력 대응, ③ 정책 수요자(기업)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는 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발주자의 범위와 발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가상자산투자자문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피해상품·불법영업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하게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보호 및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차등배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포인트씩 인상하고,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는 등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의원 등 13인)**」 ,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사 열람 시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하고,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 및 평가기준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

산업재해의 급박성 요건을 완화하여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와 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의원 등 10인)**」 ,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 행위 및 노사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에 있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외에 다른 운송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등에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의원 등 10인)**」,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2회 이상 보완시공을 하였음에도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등이 제출·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9.9~10.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기재위>, <과방위>, <농해수위>, <산자위> 등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미(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 발표(산업통상자원부) 8
-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고용노동부) 10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2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2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2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고용노동부) 13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식품의약품안전처) 13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14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4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15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해양수산부)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17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17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18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0인) 18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1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3인) 1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0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2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2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21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2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2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3
•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3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3
•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4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6인)	2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2인)	25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6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3인)	27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27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28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28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28
•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8인)	29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29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2인)	30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30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의원 등 13인)	3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손솔의원 등 10인)	31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32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3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32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6인)	33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34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34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34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35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35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일정
2.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지적재산권] 해외 저작권자의 국내 가치분 결정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로 한 실효적 조치 기대
-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 [방송통신(TMT)] 'AI 컨트롤타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 본격화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8. 20. - 2025. 9. 2.)
- [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신중해야 하는 이유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미(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 발표 - 통상현안 대응 및 수출 지원을 위해 '26년 4.3조원 정부예산 편성 - 관세대응 릴레이 업계간담회를 통해 현장 체감형 지원방안 마련	2025-09-03
---------	---	------------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하였음. 정부는 가변적이고 불확실한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① **가용 정책수단 총동원**, ② **범정부 총력 대응**, ③ **정책 수요자(기업)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중심으로 ‘현장 체감형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힘

【美 관세 피해기업 긴급지원】

① 긴급경영자금: 정책자금 13.6조원 지원 강화

정부는 우선 관세 피해기업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13.6조원의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강화함. 특히 지원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을 통해 보다 많은 기업들이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관세 피해기업 대상 정책금융>

금융기관	프로그램명	내용	지원규모
산은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관세 피해기업 대상 2~3%대 저리 운영자금 제공	3조원
수은	위기대응 특별 프로그램	기업별 적용금리비 최대 2.0%p 금리인하, 신용등급 하락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6조원
신보 · 기보	위기극복 특례보증	관세피해 업종 기업에 보증비율(최대 95%) 및 보증료율(최대 0.5%p) 우대	4.2조원
중진공 중진공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기준 금리 0.3%p 인하	0.1조원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난 해소 위한 운전자금 지원, 정책자금 기준금리 +0.5%p 적용	0.3조원
계			13.6조원

② 무역보험: 역대 최대 270조원 공급, 보험·보증 우대 및 지원 대상 확대

수출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무역보험도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원 규모로 공급. 무역보험공사는 피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료 60% 할인 대상을 기존 품목관세 업종에서 관세 부과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지원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하여 보다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

③ 물류·컨설팅 : 수출바우처 약 4,200억원('25.8~'26), 물류비 지원 2배 확대

수출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5.8월부터 '26년까지 약 4,200억원 규모의 수출바우처(KOTRA, 중진공, aT)도 기업들에게 공급. 복잡해진 관세로 인한 美 현지 통관 소요시간 증가로 물류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물류비 한도를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범위도 운송비에서 창고보관·배송·포장 서비스 이용까지 확대

④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 피해기업 대상 5,700억원 규모 지원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은 여타 품목 대비 높은 5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는 만큼, 5,7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임.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하여 피해 중소·중견기업들의 이자 부담을 경감할 계획. 무역협회에서는 철강·알루미늄·파생상품 피해기업(회원사) 대상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 200억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을 별도 편성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지원

【내수창출 및 국내산업 보호】

관세로 인한 해외수요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주요 수출품목의 국내 수요 창출 정책도 추진함. 전기차 전환지원금 신설,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을 통해 자동차·가전 소비자 수요를 확대하고, 철강·이차전지·기계의 경우 건설·토목 등 인프라 건설시 국산 철강재 사용 촉진, 지역별 노후 기계장비 교체, ES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단기 수출감소물량을 국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또한 국가별 관세율 차이, 공급과잉 등으로 불법적인 우회수출, 덤핑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불공정 무역에는 단호히 대응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보호함. 관세청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중심으로 우회수출·원산지 둔갑을 집중 단속. 우회덤핑 조사범위 확대, 철강재 수입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 의무화 등을 위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도 연내 추진할 계획임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기업들의 신흥·기회시장 개척을 위해 국내외 전시회·수출상담회 등마케팅 기회를 대폭 확대. 해외 바이어와의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하반기 해외전시회·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당초 1,600개사에서 3,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 개최도 당초 18개에서 68개로 확대 지원. 한편, 10월에는 APEC과 연계하여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봄업 코리아 Week' 계기 역대 최대 규모의 바이어(2,000개사)를 유치할 계획임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실적이 부족한 초보기업이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별도 심사 없이 계약서만으로도 최대 1억원 특별 보증한도를 제공하고, 對美 수출기업이 다른 시장으로 거래선을 다변화하는 경우 수출채권의 조기현금화 보증한도를 2배 확대

【업종별 수출경쟁력 강화】

최근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한류를 활용하여 K-콘텐츠, K-푸드, K-뷰티 등 유망수출산업을 글로벌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금융·마케팅 등 지원을 강화. K-콘텐츠의 경우, 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를 25개→30개로 확대하여 현지 협업을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콘텐츠 제작자금도 영상에서 웹툰·게임 등까지 확대하여 지원. K-푸드의 경우 한류를 연계하여 신흥시장 중심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FTA 원산지간편인증품목 확대(활방어, 닭고기 등 5개 품목 추가, '25.하반기) 등을 통해 FTA를 활용한 수출도 지원할 계획

주력산업의 경우 AI 자율주행 핵심기술 개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전고체·리튬 메탈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 AI 융합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저탄소 수소환원제철 실증 등 초격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등 인프라 조성을 통해 우리 제품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하반기「AI 미래차 경쟁력 강화방안」,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 등 주요 산업별 중장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 올해 하반기 4개월간 집중 감독, 청산율 87% 달성
- 산업구조적 체불 유인을 개선하고 체불행위의 경제적 비용 재설계
- 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여 노동존중사회 초석 마련

2025-09-02

고용노동부는 「법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적 방안을 논의하고 「임금체불 근절 대책」으로 발표했음

이번 대책은 그동안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상 제재 중심의 임금체불 감축 방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 쉬운 산업구조적 요인을 개선하고, 사업주가 체불행위를 통해 얻는 이득을 상회하는 막대한 경영상 비용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도덕적 지탄을 받는 행위로 인식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임금체불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핵심과제로 담았다고 밝힘

[올해 하반기 집중과제]

① 체불 특화 예방감독 확대,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합동 점검과 함께 체불임금 집중청산 및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로 피해노동자 신속 보호

숨어있는 체불의 선제적 청산을 위해 하반기 근로감독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1.5만개소 → 2.7만개소)하고 재직자 익명제보 감독,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감독을 진행하여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함. 또한,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추석 전 체불 집중청산 지도기간” 운영, 사업주 용자 및 대지급금의 지급범위 확대(최종 3개월분 → 6개월분 임금) 등과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변제금 회수율 제고를 위하여 회수전담센터 설치 및 국세와 같은 강제징수 절차 도입을 검토함

②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의 효능감 있는 시행 준비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올해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가 효능감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 후 제재 사례 등을 널리 알려 체불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임

[구조적 체불발생 취약점 개선]**① 임금구분 지급제, 발주자 직접지급제로 하도급 과정 중 임금 누수 방지**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업종에 대해서는 도급비용에서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도록 법제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노동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방안을 추진함. 건설, 조선 업종부터 우선 추진하되,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적용업종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

②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로 퇴직금 체불 개선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은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음. 퇴직금보다는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계획임

[체불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 강화]**① 법정형 상향으로 형벌의 억제력 제고**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막대한 경영상 비용’으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체불범죄의 법정형을 횡령 등 재산 범죄형량 수준으로 상향(3년 이하 → 5년 이하 징역)하고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설정해 나갈 계획임

② 신용제재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여 경영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계기 마련

현행 명단공개 대상 확대(3년 이내 2회 유죄 → 1회 유죄) 및 명단공개에도 불구하고 다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 적용 제외, 과징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출국금지 등을 병행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예정임. 또한, 고액 임금체불 등 악의적 체불은 체불행위가 1회라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정책자금 융자, 공공 보조·지원사업 참여 등 공공재정 투입을 제한함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기획재정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9-01 시행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9-01 시행
-------	-----------------------	---------------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한시적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5년 8월 31일까지’에서 ‘2025년 10월 31일까지’로 2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9-02 시행
-------	-------------------------	---------------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9-01 시행
---------	-------------------	---------------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매출액 중심으로 개편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매출액 규모 기준을 유지 중이나 그동안 급격한 물가 및 생산원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로 실질적인 성장 없이 중소기업의 지위를 상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 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함으로써 단순 물가 상승에 의한 중소기업 지위 상실 문제를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025-09-01 시행

근로자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 불꽃·불티 등의 비산 방지를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용접방화포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방화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9-19 시행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표시·광고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6호, 2025. 3. 18. 공포, 9. 19.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위반 사실의 게시 등 위법·부당한 표시·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조치의 제목, 위반행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표시·광고 식품 등의 명칭 및 표시·광고를 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위반 사실을 게시하도록 하는 사항 등이 포함된 문서로 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모니터링 업무의 일부를 한국식품산업협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02. ~2025.10.13.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위반 시 과태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006호, 2025. 7. 2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가중기준 및 감경기준을 명확히 하려고 하는 것임

아울러, 방탈출카페업, 키즈·만화카페업을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고,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전기설비를 응급조치 수혜 대상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전기안전관리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인 전기설비 안전관리를 추진하고자 함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044-203-3982, 팩스: 044-203-4766)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9.05. ~2025.10.15.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984호, '25.5.27. 공포, '25.11.28. 시행예정)됨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주요 내용은

- ①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신설 (안 제10조의2 및 별표 1, 제17조의2 및 별표 2, 제23조의3 및 별표 3·4, 제27조의2 및 별표 5·6)
- ② 개인투자조합·창업기획자·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 신설 (안 제10조의3, 제17조의3, 제23조의4, 제27조의3)
- ③ 법률에서 명시한 '벤처투자회사의 책임있는 사유'에 대한 구체적 정의 신설(안 제23조의 2)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 (전화: 044-204-7733)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05. ~2025.10.15.
-------	--------------------	-----------------------------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건설 관련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이 제공하는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 등이 공제금 청구 시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공제금 청구 관련 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034호, 2025. 8. 26. 공포, 2025. 11. 27. 시행)됨에 따라,

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발주자의 범위와 발주자에게 발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 및 내용을 규정하고, 실손의료공제의 계약자 등이 공제금 청구를 위한 서류를 공제조합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진료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그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 공제조합에 해당 서류를 전송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전화: 044-201-3512, 팩스: 044-201-5546)

해양수산부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02.
~2025.10.13.

새만금신항은 2010년 「신항만건설 촉진법」에 따라 신항만으로 지정·고시된 후 2019년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따라 잡화부두 2선석의 개발이 진행되어 2026년 준공될 예정임에 따라, 국제항해선박이 출입하거나 수입·수출 화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항만법」에 따른 무역항으로서의 지정이 필요하고, 나아가, 최근 「항만법」에 따라 관계부처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을 통합한 새만금항을 항만으로 지정하고, 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 그리고 각 항만은 군산항(Gunsan Port),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정하는 방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새만금항의 항만 구분·명칭·위치 및 구역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만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전화: 044-200-5921, 팩스: 044-200-5929)

해양수산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9.02.
~2025.09.26.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업종 신설 등 법 개정 완료로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필요

주요 내용은

- 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신설에 따른 조항, 용어 등 정비 (안 제22조, 제44조제2항·3항)
- ② 해양심층수 관련업자 행정처분 권한의 위임 조항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추가 (안 제45조제2항제3호)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먹는해양심층수 관련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의 대상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를 포함
- ③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 추가 (안 제46조[별표2])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전화: 044-200-5245\)](tel:044-200-524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2025-09-01 발의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가상자산 간의 교환 및 가상자산 이전, 보관 등과 관련된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이와 같이 다수의 가상자산업 유형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정의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과정을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담함에 따라 독점의 폐해, 이해상충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거래과정 단계별로 각각의 사업자를 분리하여 정하고 있는 주식시장 등에 준하여 가상자산사업자 개념을 세분화하는 등 법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됨

참고로,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거래 방지에 우선을 두어 제정된 현행법의 2024년 7월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는 최근까지 가상자산위원회를 4차례 개최하여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참여, 투자 목적의 매매 허용 방안 등을 검토하는 등 법인 투자를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는 중임

이러한 가상자산 입법 논의의 진행에 맞추어 **가상자산투자자문 및 가상자산투자일임의 개념을 신설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가상자산투자자문업자와 가상자산투자일임업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하여 가상자산투자회사 및 가상자산투자조합 등을 새로이 규정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하는 가상자산 분야에 부합하도록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1인)

2025-09-01 발의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조문을 두어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할 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및 그에 대한 불수리나 신고의 직권 말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및 유형을 기반으로 하는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가 다수의 가상자산업 유형을 광범위하게 포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고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가상자산사업자 정의를 가상자산업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추가하도록 개정하는 방향에 맞추어 현행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여 세분화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에 맞게 신고 제도가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2025-09-01 발의

현행법은 표시·광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현저히 그르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품등의 용량, 중요 원재료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으나 가격 변동이 없는 경우는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 역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품등의 용량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알지 못하여 구매 선택을 하는 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내용과 표시·광고의 방법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4조제1항)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20인)

2025-09-02 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영업자 등 사업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 과도한 소송비용과 장기간의 절차로 인해 실질적 구제는 어려운 것이 현실임. 또한 위해상품이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역시 집단소송이나 개별 소송에 의존해야 하는데, 실제로 가슴기 살균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등에서 드러났듯이 수많은 소비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여러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매년 많은 과징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상 과징금 전액이 국고로 편입되어, 실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구제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행정상의 제재금이지만 동시에 부당이득 환수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피해자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되고 있는 것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위해상품·불법영업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며,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 신설)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의원 등 10인)

2025-09-03 발의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유출·도난 등이 발생했을 경우,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귀속되며, 실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는 보상받기 위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함

기술적·관리적·물리적 보호조치의 미흡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피해자는 시간·비용 부담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움. 이로 인해 피해는 국민이 입고, 과징금은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적 비대칭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피해보상기금을 설치하여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보호 및 지원에 기금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손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의16부터 제39조의22까지 신설)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2025-09-04 발의

현행법은 원사업자에게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등에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성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지급채권이 압류되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채권이 후순위가 되어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의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터이 보호하고자 함 (안 제14조의2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2025-09-05 발의

“주권 관련 사채권”이란 장래에 발행 기업의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자금조달을 위해 활용하는 수단 중의 하나임. 현행법상 주권 관련 사채권은 공모 또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으나 절차가 간소하고 규제가 적은 사모의 방식이 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주권 관련 사채권이 사모의 방식으로 발행될 경우 특정 소수의 투자자에게만 기회가 집중되어 기존 주주들의 자본희석이라는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면 이에 대한 보호조치는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주권 관련 사채권 발행 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의 방식을 우선하도록 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5조의10제3항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1인)

2025-09-01 발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낮은 배당성향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장기투자가 저조한 편이며 이는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배당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최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1주당 배당금을 다르게 하는 차등배당의 경우 최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고 소액주주의 투자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이나 별도의 세제상 혜택이 없어 기업이 차등배당을 실시할 유인이 부족함

이에 **차등배당 시 해당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차등배당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안 제104조의27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2025-09-01 발의

국내 항만을 오가는 내항상선은 80만 도서지역 주민들의 친숙한 교통수단이자 국내 물류의 15% 이상을 담당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임. 비상시에는 국가 전략물자 운송을 위한 제4군 임무도 수행하는 등 국가경제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옴

그러나 현재 내항상선 업계는 심각한 구인난과 그에 따른 선원의 고령화와 업종의 과소화로 인해 산업 기반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음. 특히, 내항상선 선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는 특수성으로 강도 높은 장시간 근로(1주 최대 91시간), 선박이라는 공간적 고립, 열악한 작업 환경, 낮은 처우 등에 처해 있어 승선 기피 현상은 업계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음

내항해운 업계의 존폐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최근 해운조합 설문조사 결과 비과세 확대 시 95% 이상 예비선원들이 내항상선 승선근무 의향이 있다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이에 내항상선 선원 인력수급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내항상선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선원들의 급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를 적용하여 내항상선 선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3호거목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2인)

2025-09-01 발의

현행법은 대주주의 주식 등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대주주의 기준은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 정책에 따라 대주주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주식시장의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의 대주주 기준은 과세 대상의 범위가 넓어 주식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이에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면서 대주주의 기준을 시가총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94조의2 신설 등)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3인)

2025-09-03 발의

현행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제도는 특구 내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해서만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기업이 사업장 증설을 통해 신설에 준하는 증설 투자를 통해 대규모 지방투자자와 고용창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증설 기업은 현행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실제 2020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를 개정하여 사업장 신설에 한정되어 있던 세액감면 대상을 증설로 확대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바 있음. 또한 2024년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를 신설하여 공장을 신설뿐만 아니라 증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음

이렇듯 기회발전특구 내에서의 사업장 증설 등을 통해 사업장을 확충하는 것 역시 창업·신설과 동일한 지방투자 효과를 창출하며, 투자하는 기업들이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체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증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이에 사업장 증설 기업 또한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켜,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여 지방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안 제121조의33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9-03 제출

능부담(應能負擔) 원칙에 따라 조세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법인세율을 1퍼센트 포인트씩 인상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의 사회 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를 높이고,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9-03 제출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웹툰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을 위하여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중소기업의 스마트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주소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본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최대 4백만원으로 확대하고, 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서 지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 산입 한도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9-03 제출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하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9-03 제출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25-09-03 제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025-09-05 발의

현행법령은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등 유가증권으로 규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세의 높은 최고세율로 인해 납세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급히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러한 대규모 매각은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상속세의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와 순서를 상향 입법하면서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물납 대상에 포함시켜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73조)

기획재정위원회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등 10인)

2025-09-05 발의

현행법령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물납된 증권을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인인 물납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이 ‘중소기업 또는 일정 규모 이하의 중견기업’으로 제한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한 등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으로 인해, 실제 경영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 시행령의 규정을 상향하면서 대상 기업의 요건을 삭제하고,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 요건과 일정 기간 대표이사 재직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가능하도록 하며, 상속인도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여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물납매수 예약신청 기간도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상속인의 경영권 안정을 지원하고 정부의 물납증권 매각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안 제44조의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6인)

2025-09-01 발의

2025년 4월 발생한 SK텔레콤 해킹사고는 민관합동조사 결과, 해킹 공격자의 초기 침투는 2021년 8월부터 시작됐고, 2021년 12월부터 악성코드가 설치되는 등 수년간 해킹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됨. 그런데, 사상 최악의 해킹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해킹 사고 확인 1개월 전 ‘통신사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내렸음. SK텔레콤이 수년간 자사 서버에 해킹 코드가 심어져 있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이용자보호업무 ‘매우 우수’ 평가를 받게 된 것임

현행법에 따라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는 방통위가 실시하고 있는데, 방통위는 시행령에 따라 1년에 한차례 ‘이용자 보호 업무 관리체계의 적합성,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실적, 이용자 의견이나 불만 처리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이용자 보호 업무 가운데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의 중요성이 갈수록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임

그런데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대부분 담당하고 있음. 따라서 **이용자 보호 업무 중 ‘침해사고’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업무에 대한 평가는 과기정통부가 총괄하여 담당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업무와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안 제32조제2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3인)

2025-09-02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상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달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는 인력관리 및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고,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들에게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2차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바, 정보보호 체계 및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 관리 및 예산 편성 권한을 부여하고, 중대한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의3제4항제1호마목·바목, 제48조의3제4항, 제76조제3항제11호의2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의원 등 12인)

2025-09-02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킹 등 중대한 침해사고의 원인분석과 사고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의 사업장 출입 및 자료요청 권한의 경우 중대한 침해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이 모호해 법적 혼란과 함께 적극적인 사고대응을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해킹사고가 발생해 국민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자료제출 관련 의무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침해사고 관련 적극적인 피해 확산 방지와 사고대응을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권한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48조의 4제6항 및 제64조제3항)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2025-09-03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년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하여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의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여도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유인이 있으며,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게 되는 경우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항의 실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투명성 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함으로써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6조제3항제25호)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2025-09-03 발의

현행법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수집·활용 등에 관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산업 생태계에 원활하게 공급하고 이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의 생성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안 제2조, 제6조 제2항, 제8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문화체육관광
위원회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13인)

2025-09-01 발의

현행법령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표시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게임아이템 등 게임물 내 콘텐츠 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도 위 법령에 따라 일반적 규정을 적용 받고 있음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을 조작하는 행위 및 확률형 아이템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게임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온라인게임·모바일 게임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의 경우 현금·상품권 등 현금성 재화로 게임머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게임아이템을 구매하고, 게임머니로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최종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매된 게임아이템 등의 효과·성격 등을 제작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음악·도서·영상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이용자 보호의 영역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음

이에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5인)

2025-09-01 발의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편향적인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자극적 제목 사용 등으로 인해 뉴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도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사 열람 시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며, 포털을 통한 기사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뉴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포털을 통한 댓글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 함. 아울러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 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도 등록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함 (안 제9조제 7호 및 제9호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의원 등 14인)

2025-09-02 발의

글로벌 시장에서 스팀, 에픽스토어 같은 게임 콘텐츠 플랫폼이나 어도비와 같은 소프트웨어 판매 기업은 일반적으로 구매 후 14일 이내에 콘텐츠 환불이 가능하도록 정책을 운영하고 있음. 반면, 국내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하는 이 법에 따라 콘텐츠 청약 철회 기준이 7일로 규정되어 있어 소비자들은 국내외 콘텐츠 플랫폼 간 상이한 환불 정책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콘텐츠 청약 철회에 대한 환불 기간을 14일로 조정하여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안 제27조)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등 10인)

2025-09-01 발의

현행법은 전력시장을 통한 전력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한해 직접 전력공급이 허용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 등 무탄소·청정 전력에 대한 직접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원자력 발전 전력은 직접 전력공급이 불가능해 수요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무탄소·청정 전력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6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등 10인)

2025-09-02 발의

비대면 소비의 확산과 배달 외식 수요의 급증으로 외식중개플랫폼(배달앱)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이로 인해 많은 외식사업자가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 거래하고 있으며, 외식중개플랫폼은 외식업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잡고 있음. 그런데 일부 대형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가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부과하여 소상공인인 외식사업자의 경영 안정을 저해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는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나 보호 장치가 없어 외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함**으로써, 과도한 이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의원 등 18인)

2025-09-05 발의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제품의 안전성조사 실시 및 수거·파기·교환 등의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 국내 유입되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위해 우려가 있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을 해외위해제품으로 지정하고 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품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 신설 등)

보건복지위원회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의원 등 10인)

2025-09-02 발의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의 수급 불안정은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하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에 대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수급불안정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불안정의약품 중 긴급 생산·수입 의약품으로 지정된 의약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긴급 생산·수입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공급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0호, 제83조의10부터 제83조의15까지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2인)

2025-09-01 발의

현행법은 구인자에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 및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구직 여부 결정에 필수적인 근로조건이나 채용심사의 평가기준, 전형별 구체적인 일정 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음. EU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도 채용 전 임금조건을 명확히 공개하는 등 임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구인자가 채용공고를 게시할 때 임금을 포함한 주요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시하고, 채용 전형별 세부 일정 및 평가기준을 구직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2025-09-02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제한적 요건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사고가 임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적시에 작업을 중단하거나 대피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더욱이 현장에서 안전 확보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근로자 대표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작업 중지 권한이 없어, 위험 상황 발생 시 즉각적으로 근로자 대피를 지시하거나 작업을 중단시키기 어려움.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작업 중지를 유도했을 경우, 사업주가 민형사상 소송이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행사할 수 있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과 사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의 급박성 요건을 완화하여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선제적으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근로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에게도 작업중지와 대피 지시 권한을 부여하고자 함.** 아울러, 근로자 등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하고,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장의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안 제52조, 제170조)

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3인)**

2025-09-03 발의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교통비, 숙박비 등 다양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소득이 없는 구직자에게 이러한 비용은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음. 또한 면접수당은 단순한 실비 보전의 의미를 넘어, 구직자가 면접 준비와 참여에 투입한 시간과 노력을 존중하고 보상하는 성격을 지님. 채용 면접은 구직자의 자발적 요청이 아니라 구인자의 인력 수요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인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음

이에 **채용 과정에서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 구인자의 면접수당 지급과 지급 여부와 기준의 사전 통보를 의무화**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9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손술의원 등 10인)

2025-09-03 발의

최근 야간 작업을 하는 사업장에서의 잇따른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심야 장시간 노동이 지목되고 있음. 야간 근로시간대의 사망자수가 2022년 60명, 2023년 55명, 2024년 63명이고 2025년에도 계속 발생하고 있음. 산업안전연구원의 2024년 연구 결과에서 야간근로자는 비야간근로자에 비해 육체적 건강위험이 1.2배~2.2배 높고 정신적 건강위험이 1.1배~1.9배 높으며 야간근무,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중 2가지 이상을 할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사망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사업장들은 장시간 야간근로, 연속 밤샘근무와 교대근무를 시행하는 곳이었음. 야간 근로사업장의 사망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줄이기 위해 **야간근로 시 근로자 본인의 동의, 야간노동시간의 제약, 퇴근 이후 출근까지 충분한 휴식 시간의 확보, 선택적 근로시간제에서 야간근로자를 제외하고자 함** (안 제56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의원 등 12인)

2025-09-04 발의

최근 반(反)기업법, 귀족노조법으로 통칭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까지 탈(脫) 한국을 언급하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음

특히, 협력업체가 최대 수천 개에 달하는 조선과 자동차, 건설 등 업종은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나 파업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끓고 있음. 이러한 기업의 우려처럼 현재 통과된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과 상관없이 하청 노조들의 요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5,0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까지 추진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상황임

이에 건전한 노사 관계 정립을 위해 기업들이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금지해 폭력 행위 및 노사 분쟁 장기화를 방지하고, 노조법상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용자에게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어권을 인정하고자 함 (안 제42조, 제43조 및 제91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0인)

2025-09-04 발의

2024년 기준 연간 임금체불액은 2조 4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음. 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하는 필수적 수단으로 체불은 임금 절도에 해당하는 중요한 범죄이지만 주요 국가 대비 막대한 규모의 임금체불로 인하여 노동자, 특히 취약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임금체불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임금체불 심각성에 비해 처벌의 수준이 미흡하여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음

이에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벌칙에 있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여 다른 중요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피해 노동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법절차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한편, 임금체불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안 제107조 등)**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2025-09-04 발의

최근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노동자가 지게차에 강제로 묶인 채 끌려다니는 영상이 언론에 보도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발생했음. 현행법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해서는 아니된다는 차별금지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지난 5월, 한 달걀 공장에서 베트남 출신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인 간부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한 축산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출신 외국인노동자가 생전 농장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기숙사에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음. 이 같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어 괴롭힘과 차별을 막기 위한 실효적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및 차별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차별 금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의 법적 실효성과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26인)

2025-09-05 발의

현행법은 제15조 이하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5조), 관리감독자(제16조), 안전관리자(제17조), 보건관리자(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제19조) 등 안전보건에 관한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안전관리자 등’이라고 함)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안전관리자 등은 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서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점검해야할 필수서류일뿐만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시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서류임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 및 업무에 관한 서류를 안전관리자 등으로 지정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현장관리자가 대신 작성, 서명날인하는 등 해당 서류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확인됨. 산업재해예방 및 조사, 책임규명에 필수적인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서류의 작성,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자칫 산업재해 예방과 발생의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일례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의 관리감독자 선임서가 작성되어 있었고, 선임서는 사망사고의 책임을 묻는 재판에서 피해근로자가 관리감독자로 선임될만큼 안전보건에 관한 경험이 많았음에도 개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는 근거로 사용됨. 그러나 이후 피해근로자의 동의 없이 현장관리자가 관리감독자 선임서를 대신 작성하고 피해근로자의 서명인 것처럼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점검하는 중요 서류이고 관리감독자 등으로 선임된 자의 책임소재를 확인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인 만큼, 작성 및 관리가 제대로 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안전관리자 등의 선임 및 업무에 관한 자료의 작성을 해당 근로자가 자신이 의사에 따라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허위로 기재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근거를 두어, 안전관리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회피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 (안 제19조의 2 등)

환경노동위원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2025-09-05 발의

중대재해의 발생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21년 현행법이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에 있음

그러나 현행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중대재해가 재발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형식상의 지위·직위 여하를 불문하고 그 범위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등으로 보도록 하고 과징금 제도도 신설하여, 사업장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보다 강하게 구축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다 강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9호가목 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등 10인)

2025-09-01 발의

현행법령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에 대하여 소음 방지를 위한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및 다중생활시설 등에서 가구·세대 간 소음으로 인한 분쟁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벽간 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이 미흡한 상황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음의 범위에 벽간 소음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이러한 소음 방지를 위하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의 경계벽 및 바닥을 충격차단 성능기준 등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여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및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제4항)**

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의원 등 10인)

2025-09-02 발의

최근 일부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운송가맹점(이하 “가맹택시”)이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배회영업 등을 통해 받은 운임에까지 수수료를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계약을 가맹택시에 가중한 부담을 주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플랫폼가맹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부당한 가맹수수료 부과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플랫폼가맹사업자가 자사 운송플랫폼을 통한 운송계약 외에 다른 운송계약에 따라 받은 운임 등에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플랫폼가맹사업 시장의 공정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의13제7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5-09-02 발의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는 주택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을 검사받아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보완 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바닥충격음으로 인한 불편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완 시공이 권고사항에 불과하여 이행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행법상의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용검사를 하지 않고 성능검사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하는 한편, 2회 이상 보완시공을 하였음에도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시공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바닥충격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의2 등)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2025-09-04 발의

최근 주택과 각종 건축물의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을 활용한 시멘트가 널리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이 과정에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4. 9. 20. 시행)되어 시멘트 제조 단계에서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가 의무화되었으나, 실제로 어떤 건축물에 폐기물 사용 시멘트가 얼마나 사용되는지에 관한 정보는 여전히 투명하게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모든 주택과 건축물의 시공자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성분과 사용량 등을 행정기관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보장, 건축물의 안전성 및 신뢰성 제고, 그리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안 제52조의 7, 제113조)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9/9(화) 10:00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9/10(수) 10:00	-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국민의힘)

2.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기재위	전체회의	9/8(월) 14:00	- 법안 상정
	경제재정소위	9/9(화) 11:00	- 법안 심사
	조세소위	9/10(수) 11:00	- 법안 심사
과방위	정보통신방송 법안소위	9/9(화) 11: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11(목) 15:00	- 법안 심사
행안위	국정조사	9/10(수) 11:00	- 기관 보고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농해수위	농림법안소위	9/11(목) 10:00	- 법안 심사
산자위	전체회의	9/8(월) 14:00	- 법안 상정, 현안질의
	산업특허소위	9/9(화) 14:00	- 법안 심사
	중소벤처소위	9/11(목) 10:00	- 법안 심사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8(월) 10:00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의 현대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 새정부 국방정책 점검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 IV	성일종·강대식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9/9(화) 10:00	자본시장 신뢰를 흔드는 IT 거버넌스, 네이버·카카오를 말하다 : 지배구조 진단과 개선 과제 모색 토론회	신장식·오기형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9/9(화) 14:00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지연·박정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10(수) 08:00	현장에서 본 중국산업의 발전과 대응국 대우전략 제언 : 한중의원연맹 2025 제3회 정책세미나	김태년·김성원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9/10(수) 09:30	지능형교통 산업발전 토론회 : 지속가능한 지능형교통체 계 추진과 산업발전을 위한 토론회	이연희·신영대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소회의실
	9/10(수) 14:00	건설현장 AI기반 로봇기술을 활용한 건설관리 고도화 방 안 : 스마트건설 활성화 방안	손명수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강당
	9/11(목) 13:30	왜 우리의 미래가 중동에 있는가? : AI·수소·방산 협력 전 략	김건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9/11(목) 14:00	세포배양육 식품산업화, 이대로 좋은가 : 제12차 K-바이 오헬스 포럼	조경태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대강당
	9/11(목) 14:00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우수식품 산업 활성화 방향	소병훈·이개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9/12(금) 10:00	K-스틸법 발의, 그 의미와 향후 과제	이상휘·어기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자료집 등	9/8(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17호(2025-17호) 발간	국회도서관	
	9/9(화)	「최신외국입법정보 2024」 발간		
	9/10(수)	「금주의 서평」 제745호(2025-36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8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9/1(월)	「Data+」 제17호(2025-17호)	국회도서관	
	9/3(수)	「금주의 서평」 제744호(2025-35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9/3(수)	지적재산권	해외 저작권자의 국내 가처분 결정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을 상대로 한 실효적 조치 기대
9/5(금)	노동	월간 노동 뉴스레터
9/5(금)	방송통신 (TMT)	‘AI 컨트롤타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 본격화
9/5(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8. 20. - 2025. 9. 2.)
9/5(금)	노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신중해야 하는 이유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